



「중대재해처벌법」 「어선안전조업법」 이행 서식

어선명()호



해양수산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중대재해처벌법」
「어선안전조업법」
이행 서식**

어선명()호

이 서식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 원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안전·보건 경영방침	06
어선 안전·보건 목표	07
어선관리감독자 임명장	08
어선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09
어선원 안전·보건 예산 내역	10
어선원 안전·보건 자체 교육 일지	11
어선원 제안 제출서	12
위험성평가	13
위험성평가 회의·교육 결과	30
재해발생시나리오별 비상조치 계획	31

어선원재해 발생 위험 시 어선관리감독자의 조치 매뉴얼	32
어선원재해 발생 시 어선관리감독자의 조치 매뉴얼	33
비상훈련 실시	34
어로 및 작업장비 보수관리 기록서	35
중대재해 대응 절차 점검표	36
어선관리감독자 평가표	37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	38
어선원 재해기록부	39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조치 점검표	40
도급, 위탁, 용역 작업 위험성평가표	41

()호 안전·보건 경영방침

()호는 경영 활동 전반에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어선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한다.

1.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경영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어선소유자는 어선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선의 위험 요인 제거·통제를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어선원의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 년 월 일

어선소유자

(서명)



어선 안전·보건 목표

() 호 안전·보건 목표

구분		목표 설정치
1	안전·보건 경영방침 게시 건수	건 이상
2	안전·보건 목표 어선원 인지율(설문조사)	% 이상
3	안전제안·신고 건수	건 이상
4	유해·위험 요인 발굴 건수(위험성평가)	건 이상
5	유해·위험 요인 개선 이행률(위험성평가)	% 이상
6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가율	% 이상
7	기계·설비 등 정기 검사 실시율	% 이상
8	어선원 안전·보건 교육 이행률	% 이상

20 년 월 일

어선소유자

(서명)

※ 목표 설정의 세분화 정도, 설정 단위(전체·어선별·어선 내 구역별·현장별·팀별 등) 등은 어선 규모, 유해·위험 요인의 유형, 종사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 상기 예시중 1~2건으로 조정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작성 가능함

임명장

어선명

성명

위 사람을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해 어선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어선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어선관리감독자 업무

1. 어선 내에서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어선원의 작업복·보호장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6. 그 밖에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 기준」에서 정하는 업무

20 년 월 일

어선소유자

(서명)

어선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회의 일시	어선명		회의 장소	회의 구분	☐ 정기 ☐ 임시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참 석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참 석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어선소유자				어선원대표		
	어선관리감독자				어선원대표가 지명한 어선원		
	어선 소유자가 지명한 어선원				어선원대표가 지명한 어선원		
	어선 소유자가 지명한 어선원				어선원대표가 지명한 어선원		
관련 근거		어선안전조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내지 제13조의7					

심의·
의결사항

의결 사항
찬성/
반대 의견

안전·보건 예산

어선명	
어선 소유자	
예산 수립일자	

분야 / 항목			
경 영	()년도 안전·보건 목표 추진		
	안전·보건 관련 자격·인증 획득		
	예비비		
인 력	안전·보건 담당 인력 채용비		
	안전·보건 담당 인력 육성 및 교육비		
	안전·보건 조직 특별 수당 지급		
	예비비		
시 설 및 장 비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어로설비·작업장비 방호장치 설치 비용		
	어선 검사 실시 비용		
	안전보호구(PPE) 구입·보수 비용		
	휴게·위생시설 관리 비용		
	예비비		
유해 · 위험 요인 개선	위험성평가 실시 비용		
	어선원 건강검진 실시 비용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		
	어선안전보건표지 구입 비용		
	예비비		
기타 활동	안전·보건 관련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안전·보건 관련 특별교육 실시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건강검진 실시율		
총액			



안전·보건 자체 교육일지

결 재	어선명	
	어선관리감독자	
	어선소유자	

순번	일시	방법	내용	교육 실시자	어선원(서명)	비고
1						
2						
3						
4						
5						
6						
7						

어선원 제안 제출서

어선명	
제안자	
제안 일자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	

요청 내용	
개선(기대)효과	

처리 일자		처리자	
처리 결과			
비 고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승 인

기 안

제 정

개 정

제1조(목적) 이 실시 규정은 우리 어선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의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 규정은 어선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어선소유자		노동자(각 어선원)	
성명		성명	
어선관리감독자			
직위			
성명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어선소유자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 표명 - 안전·보건 방침과 추진 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과 역할 부여 -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 요인 발굴 지원 ○ 예산 지원 및 어선원재해 예방 노력 ○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 어선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어선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 어선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어선원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활동에 참여 ○ 담당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 수칙 및 위험성평가 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방법 숙지 ○ 위험한 장소 인지 ○ 아차사고 사례의 적극적 제보

제5조(평가 대상) 어선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 ① 어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어선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 ② 어선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⑤ 어선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 ⑥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제6조(실시 시기) 어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표 2>와 같다.

<표 2> 어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평가 종류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
실시 시기	어선 인수 후 1개월까지	○ 최초 평가 결과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 해당 기간 내에 수시 평가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경우 적정성 재검토	○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해당·고려 사항	-	○ 정기평가시 고려 사항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어선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수시 평가 해당 사항 1. 어선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2. 기계·기구, 설비, 어구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기계·기구, 설비, 어구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경우 5.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어선소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 사항	-	○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인정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제7조(실시 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어선소유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② 위험성평가 전담 직원(어선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 ③ 작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어선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어선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게시 등을 통해 전체 어선원에게 알리고, 어선원 안전·보건 교육 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내용에 포함한다.
- ⑥ 필요시 전담 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절차)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사전 준비

- 작업 공정은 선박 정비 - 출항 준비 - 출항 및 어로 준비 - 조업 - 어획물 취급 및 적부 - 입항 및 하역 준비 - 하역의 7개로 구분한다. 다만, 어선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공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어선원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위원에게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교육하고 어선소유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어선원 모두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 기준을 설정하며 공유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 공정별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 가) 사용되는 어로 기계의 규격 형식, 알고 있는 위험 요소, 점검 확인이 필요한 개소 등의 위험 정보
 - 나) 작업 재해가 발생한 장소
 - 다) 조명, 월파, 요동, 과도한 진동, 시계 차단 등의 환경적 위험 정보
 - 라) 기계, 작업장 등 환경 요소 외의 일반적인 위험 정보
- 본선과 유사선의 아차사고 등 과거 재해 사고 사례에 나타난 유해·위험 요인들을 공정별로 수집하고 파악한다.
-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 : 유해·위험 요인 파악

- 가장 중요한 단계로 각각의 작업공정에 관여되는 유해·위험 요인들과 일어났거나 우려되는 재해의 유형을 파악한다.
- 작업을 주도하는 베테랑 어선원들을 반드시 참여시킨다.
-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들은 현장 조사와 어선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한다.

3단계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 요인 파악 후 현재의 조치 사항이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일반 작업 안전 수칙의 내용 이상을 만족하도록 합리적으로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인지를 결정한다.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5단계 :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어선원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보존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제9조(위험성의 판단 방법)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들에 어선원이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하는 방법은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과 체크리스트법 등 어선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제10조(위험성의 수준 판단 기준과 위험성의 결정 방법) 우리 어선의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은 어선소유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어선원들이 모인 최초·정기 위험성평가 착수회의 등을 통해 다음의 기준을 따라 정한다. 그 기준에 따라 공정별로 유해·위험 요인마다 판단하고 위험성을 결정한다.

< 고·중·저 판단법 >

위험성 수준	위험성 수준의 내용	위험성 결정
고(높음)	중대재해, 장애가 남는 위험	허용 불가능
중(보통)	휴업 요양이 필요한 위험, 중대재해급의 아차사고 사례 내포	허용 불가능
저(낮음)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	허용 가능

< 체크리스트 판단법 >

위험성 수준	위험성 수준의 내용	위험성 결정
보안	중대재해, 장애가 남는 위험, 휴업 요양이 필요한 위험 중대재해급의 아차사고 사례 내포	허용 불가능
적정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	허용 가능

- ①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와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한다.
- ②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큰 재해에 대해 추정한다.
- ③ 과거에 발생한 같은 사고로 인한 재해의 정도를 고려한다.
- ④ 본선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다른 어선의 사례 등의 근거를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
- ⑤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일반적 특성과 사고 때 나타나는 재해의 수준을 고려한다.

제11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방법) ① 어선소유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위험한 작업의 중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조치
- 방호대 설치, 비상정지장치 등의 공학적 대책
- 작업 안전수칙,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습관적 행동의 교정
- 작업 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의 실시 등

- ② 어선소유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확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 ④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제12조(어선원에 대한 공유) 우리 어선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어선원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알기 쉬운 방법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 ② 우리 어선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에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을 신규 또는 갱신하여 반영
- ③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내용 포함
- ④ 작업절차서, 작업 안전수칙의 신규 제정 또는 갱신에 반영 등

제13조(어선원의 참여 방법) 우리 어선은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어선원이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14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우리 어선의 유해·위험 요인들이 「어선안전조업법」과 기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선소유자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작업자 의견 청취를 통해 확인
- 4. 각 단계에 현장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 ③ 어선소유자는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 ④ 위험성평가 참여자는 위험성 결정 시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다.
- ⑤ 위험성평가에서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해당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 ⑥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어선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 ⑦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등 법으로 정한 경우에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점검 및 개선 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나 추가적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차기(다음번)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어선소유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선원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어선원이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안전·보건 위험 정보

안전·보건상 위험 정보							조사일	
							담당자	(인)
공정	기계, 기구, 설비 요인		장소 요인		환경 요인		기타 요인	
	기계, 기구 및 설비명	재해 유형	작업 장소	재해 유형	해황, 소음, 조명 등	재해 유형	중량물, 물질, 제도 등	재해 유형
선박 정비	주기관	이상 온도· 물체 접촉	기관실 계단	떨어짐			주기관 냉각수	이상 온도·물체 접촉
	전동공구	절단·베임·잘림	마스트 등 높은 곳	떨어짐			어로용 닻, 기관 부속 등 중량물	맞음, 끼임
	닻	끼임, 맞음	어창구	떨어짐			작업 전 안전교육 미 실시	관련 유형
출항 준비	닻 등의 어구	끼임, 맞음	닻 거치대	끼임, 맞음	너울, 조석차	빠짐·익사	보행 부주의	넘어짐
	육상 크레인	맞음	접안 현측	빠짐·익사			중량물 취급 불량	맞음
	캡스ตัน과 줄	끼임, 맞음	갑판	넘어짐			승하선 부적절	떨어짐, 빠짐·익사
	사이드드럼	끼임, 맞음	화물차 적재함	넘어짐			개인 보호구 미착용	맞음
	이동식 사다리	떨어짐	육상 크레인 작업장	맞음			실수	관련 유형
출항 및 어로 준비	계선줄	빠짐·익사	접안 현측	빠짐·익사	조석차	빠짐·익사	경계 부실 충돌	넘어짐, 빠짐·익사
			갑판	넘어짐			승하선 부적절	떨어짐, 빠짐·익사
조업	닻 등의 어구	끼임, 맞음, 빠짐· 익사, 넘어짐	닻 거치 갑판	넘어짐, 끼임, 맞음	파도, 거친 날씨	넘어짐, 끼임, 불균 형 및 무리한 동작	부주의	넘어짐
	닻 거치대	끼임	투망 갑판	끼임, 빠짐·익사	시야 방해	맞음, 끼임, 넘어짐	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관련 유형
	볼roller 양망기	끼임	현측 통로	빠짐·익사, 넘어짐			관습적 행동	
	사이드드럼	끼임	현측 난간 상면	빠짐·익사			작업 복장 불량	끼임
	캡스ตัน	끼임	기관실	화재			개인 보호구 미착용	맞음
	당김줄	맞음, 끼임					경계 부실 충돌	넘어짐, 빠짐·익사
	어구 부속구	맞음					반복작업	근골격계질환
	노후 마스트, 용두 도르레	맞음, 깔림					중량물 취급 불량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넘어짐, 맞음
	어창구	떨어짐					작업 전 안전교육 미흡	관련 유형
어획물 취급 및 적부	어상자	끼임, 맞음	처리 갑판	넘어짐	파도, 거친 날씨	넘어짐, 깔림	냉동고기 블록	끼임, 맞음
	자숙술	이상 온도· 물체 접촉	어창구	떨어짐			자숙물	이상 온도·물체 접촉
			어창	깔림, 맞음			고기 진, 해파리	넘어짐
			급랭실	끼임, 맞음			고기 가시	절단·베임·잘림
							부주의	넘어짐, 맞음
입항 및 하역 준비	계선줄	끼임	안벽과 현측	끼임	조석차	빠짐·익사, 떨어짐	부주의	끼임, 넘어짐
	계선주	끼임	갑판	넘어짐			개인 보호구 미착용	맞음, 넘어짐
하역	하역 컨베이어	끼임, 맞음	접안 현측	빠짐·익사	조석차	빠짐·익사, 떨어짐	반복작업	근골격계질환
	육상 크레인	끼임	육상 안벽	빠짐·익사	너울	넘어짐, 맞음	승하선 부적절	떨어짐, 빠짐·익사
	사이드드럼	끼임	어창구	떨어짐			냉동고기 블록	맞음
	멀치 채반, 어상자	끼임, 맞음						
	손잡이줄	끼임, 맞음						



위험성 평가표

위험성평가 결과표						
평가 대상 공정 : 선박 정비				평가일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 닻, 철판 등을 정비하고 거치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밀다가 실수로 끼임, 맞음	☐ ☐ ☐ 고 중 저				
2	• 육상 크레인으로 어구 정비차 하역해 차량 적재 과정에서 크레인 조작자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하역 작업자가 그물에 걸려 달려 올라간 후 떨어짐	☐ ☐ ☐ 고 중 저				
3	• 전동 그라인더를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 내려두다 실수로 베임	☐ ☐ ☐ 고 중 저				
4	• 드럼(토시) 분리하여 손 운반 중 놓쳐서 맞음	☐ ☐ ☐ 고 중 저				
5	• 선박 내 또는 선거 고소작업 중 발판, 사다리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 ☐ ☐ 고 중 저				
6		☐ ☐ ☐ 고 중 저				

위험성평가 결과표						
평가대상 공정 : 출항 및 어로 준비				평가일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 출항작업 중 계선줄을 육상 비트에서 풀고 부적절하게 뛰어 승선하다 떨어짐, 빠짐·익사 • 출항 직후 계선줄 정리 작업 중 계선줄을 강하게 당기다 균형을 잃어 떨어짐, 빠짐	☐ ☐ ☐ 고 중 저				
2		☐ ☐ ☐ 고 중 저				
3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위험성평가 결과표						
평가 대상 공정 : 출항 준비				평가일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 닻을 정비 후 선수 또는 우현측 거치대로 이송·거치하는 과정에서 힘이 부쳐서 손이 끼임	☐ ☐ ☐ 고 중 저				
2	• 크레인으로 채반, 어구 등을 달아 정비하거나 선적할 때 어구의 일부 또는 중량 부속구(뿔침대, 부이)가 슬링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맞음	☐ ☐ ☐ 고 중 저				
3	• 육상 크레인 임의 조종 등 습관적 행동과 실수에 의한 맞음, 넘어짐	☐ ☐ ☐ 고 중 저				
4	• 캡스턴 등의 회전기계에서 줄 작업 중 급작스러운 동하중의 증가로 터지거나 튕긴 줄에 맞음	☐ ☐ ☐ 고 중 저				
5	• 승하선 시 습관적으로 뱃전을 넘다가 조석 차로 넘어짐, 떨어짐, 빠짐	☐ ☐ ☐ 고 중 저				
6	• 이동식 사다리를 걸고 고소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고정되지 않고 흔들려 중심을 잃거나 미끄러져 떨어짐 • 어창에 사다리를 걸고 오르내리다 미끄러져 떨어짐	☐ ☐ ☐ 고 중 저				
7	• 좁은 통로 또는 작업 공간에서 작업 중 부주의로 선체 돌출물 등에 부딪히거나 넘어짐	☐ ☐ ☐ 고 중 저				
8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위험성 평가표

위험성평가 결과표						
평가 대상 공정 : 조업(어로작업)				평가일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 투하되거나 빠르게 이송되는 그물이나 줄에 근접하여 신체 끼임, 빠짐·익사 - 부주의로 인양되는 닛 등의 어구와 거치대(선체) 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2	- 볼롤러, 사이드롤러 등의 풀리, 드럼에 줄 또는 그물을 걸어서 감아 올리거나 내리는 중에 실수로 회전체와 어구 사이에 근접하여 신체 끼임 - 토시, 장갑, 옷깃 등 노출물이 회전체에 말려 들어가 신체가 끼임	□ □ □ 고 중 저				
3	- 양망, 양묘 중에 부식, 마모로 터진 줄(와이어)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머리 맞음 - 줄 조작 미숙으로 드럼, 롤러에서 탈락하거나 얽혀 튕긴 줄에 맞음, 빠짐 - 강한 장력이 걸려 풀리며 튕긴 줄에 맞음	□ □ □ 고 중 저				
4	노후된 당김줄이 터져 낙하하는 줄에 달린 어구에 작업원 맞음, 깔림	□ □ □ 고 중 저				
5	어구 투·양망 중 급하게 이동되는 뭉쳐진 그물 또는 연결된 속구, 줄에 맞음	□ □ □ 고 중 저				
6	- 양묘 과정에서 거치대에 안착되지 못하고 이탈하거나 튀는 닛에 근접 작업원 맞음 - 범포돔, 파이프(중대) 등 대형 부속구를 인양 하던 중 튕 부속구에 근접 작업원 맞음	□ □ □ 고 중 저				
7	노후되었으나 정비 불량하여 하중이 걸리면서 파손된 마스트, 용두, 도르래 등에 맞음, 깔림	□ □ □ 고 중 저				
8	선체 요동, 미끄러짐으로 인해 주변 구조물, 양망되는 어구에 부딪힘, 넘어짐	□ □ □ 고 중 저				
9	- 보행 중 어창구 헛디딤 떨어짐 - 습관적으로 현측 난간 상부에 올라 작업하다 떨어짐, 빠짐	□ □ □ 고 중 저				
10	기관실 배전반 전기 화재로 인한 화상, 사망, 선박 소각	□ □ □ 고 중 저				

위험성 평가표

위험성평가 결과표						
평가 대상 공정 : 조업(어로작업)					평가일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1	• 어로작업 중 타 선박의 과실과 본선의 경계 부실로 선박 간 충돌에 의한 부상, 선체 손상	☐ ☐ ☐ 고 중 저				
12	• 파도에 의해 갑작스러운 선체의 요동이 발생하여 넘어짐 • 선체 요동으로 어구가 쓸려 줄 터짐, 틈으로 끼임, 맞음 • 요동으로 닻이 거치대에서 이탈되어 맞음, 끼임	☐ ☐ ☐ 고 중 저				
13	• 더위와 강한 햇볕 상태에서 작업으로 인한 일사병	☐ ☐ ☐ 고 중 저				
14		☐ ☐ ☐ 고 중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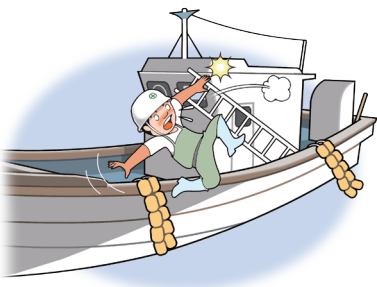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결과표						
평가 대상 공정 : 어획물 취급 및 적부					평가일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 어상자, 냉동고기 블록 적재 중 부주의로 손 끼임	☐ ☐ ☐ 고 중 저				
2	• 급랭실 선반에서 선체 요동으로 미끄러져 낙하하는 고기 냉동 블록에 맞음 • 어창 적재 작업 중 부주의로 낙하하는 어상자에 맞음 • 어창에서 선체 요동 또는 하부 적재 불량으로 무너지는 적재 어획물에 깔림	☐ ☐ ☐ 고 중 저				
3	• 미끄러운 고기 진, 해파리 등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짐 • 어획물 손 운반 중 걸리거나 헛디딤 넘어짐	☐ ☐ ☐ 고 중 저				
4	• 어창 적재차 어창구 주변에서 보행 중 부주의로 미끄러져 떨어짐 • 자숙술 청소 중 부주의로 미끄러져 떨어짐	☐ ☐ ☐ 고 중 저				
5		☐ ☐ ☐ 고 중 저				
6		☐ ☐ ☐ 고 중 저				

위험성평가 결과표						
평가 대상 공정 : 입항 및 하역 준비					평가일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 입항 계류 작업 중 타선 또는 안벽 계선주와 계선줄 사이에 끼임 • 입항 계류 작업 중 부주의 또는 습관적 행동으로 타선 또는 안벽 사이에 끼임	☐ ☐ ☐ 고 중 저				
2		☐ ☐ ☐ 고 중 저				

평가작업:

평가자:

평가일자:

순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마련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체크	개선 실현 방안		
1		☐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	사다리 고박 설치 후 사용		
		☐	고소작업 전 안전수칙 교육 및 장구 확인		
		☐	안전대 구입 비치		
		☐			
	고소작업 중 발판, 사다리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			
	위험성 결정 (㉮)				
	적정	보완	해당 없음		
	☐	☐	☐		

평가작업:

평가자:

평가일자:

순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마련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체크	개선 실현 방안		
1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			
		☐			
		☐			
	주기관 쿨러 냉각수 배출 중에 고온 냉각수의 온도를 점검하지 않고 캡을 열어 증기와 고온의 냉각수에 의해 화상	☐			
	위험성 결정 (㉮)				
	적정	보완	해당 없음		
	☐	☐	☐		

평가작업:

평가자:

평가일자:

순 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마련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체크	개선 실현 방안		
1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강한 장력이 걸린 줄에 근접 금지		
		☐			
		☐			
		☐			
	캡스턴 등의 회전기계에 줄작업 중 급작스러운 동하중의 증가로 노후된 줄이 터지거나 튕긴 줄에 맞음	☐			
	위험성 결정 (㉮)				
	적정 보완 해당 없음	☐			
	☐ ☐ ☐				

평가작업:

평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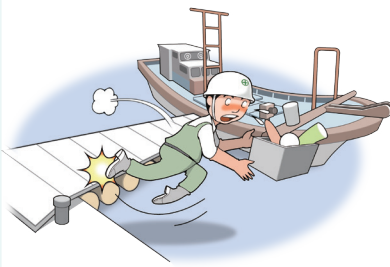
평가일자:

순 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마련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체크	개선 실현 방안		
1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			
		☐			
		☐			
	보행, 손 운반 중 갑판의 요철을 보지 못하고 헛디딤 넘어짐	☐			
	위험성 결정 (㉮)				
	적정 보완 해당 없음	☐			
	☐ ☐ ☐				

평가작업:

평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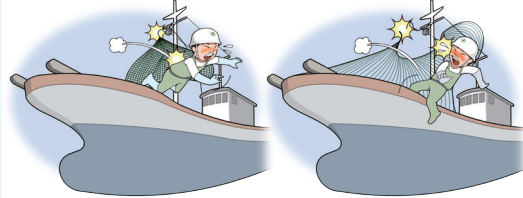
평가일자:

순 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마련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체크	개선 실현 방안		
1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현측 난간 상면 보행금지		
		☐	뛰어 승하선 금지		
		☐	승하선 사다리와 안전망 설치		
		☐	승하선 안전수칙 개선		
	조석차가 큰 항구 물량장에서 습관적으로 배에 타던 중 현측 난간 상면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빠짐·익사				
	위험성 결정 (㉮)				
	적정 보완 해당 없음	☐			

평가작업:

평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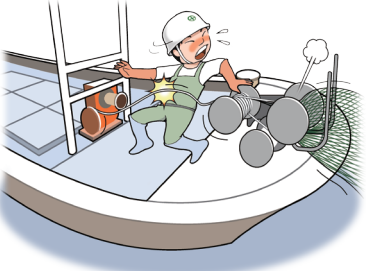
평가일자:

순 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마련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체크	개선 실현 방안		
1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달린 어구, 중량물 아래 출입금지		
		☐	줄 상태 수시 점검		
		☐	투·양망 시 안전구역 대피		
	노후된 당김줄이 터져 달린 어구가 낙하되어 아래에 있던 작업원이 맞음, 깔림				
	위험성 결정 (㉮)				
	적정 보완 해당 없음	☐			

평가작업:

평가자:

평가일자:

순 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마련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체크	개선 실현 방안		
1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투·양망 시 안전구역 대피		
		☐			
		☐			
		☐			
	어구 투·양망 중 몽쳐진 그물 또는 연결된 속구, 줄이 급하게 이동되며 튀어 맞음	☐			
	위험성 결정 (㉮)				
	적정 보완 해당 없음	☐			
	☐ ☐ ☐				

평가작업:

평가자:

평가일자:

순 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마련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체크	개선 실현 방안		
1		☐	주기적인 휴식 부여		
		☐			
		☐			
		☐			
		☐			
	더위와 강한 햇볕 상태에서 작업으로 인한 일사병	☐			
	위험성 결정 (㉮)				
	적정 보완 해당 없음	☐			
	☐ ☐ ☐				

위험성 평가표

어획물 취급 및 적부

평가작업:

평가자:

평가일자:

순 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마련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체크	개선 실현 방안		
1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			
		☐			
		☐			
	미끄러운 고기, 진, 해파리 등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짐	☐			
	위험성 결정 (㉞)				
	적정 보완 해당 없음	☐			
	☐ ☐ ☐				

평가작업:

평가자:

평가일자:

순 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마련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체크	개선 실현 방안		
1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			
		☐			
		☐			
	어획물 보관차 어창구 주변에서 보행 중 부주의로 미끄러져 떨어짐	☐			
	위험성 결정 (㉞)				
	적정 보완 해당 없음	☐			
	☐ ☐ ☐				

위험성평가 회의 / 교육 결과

회의/교육일시	
회의/교육장소	

• 회의 / 교육 내용

• 참석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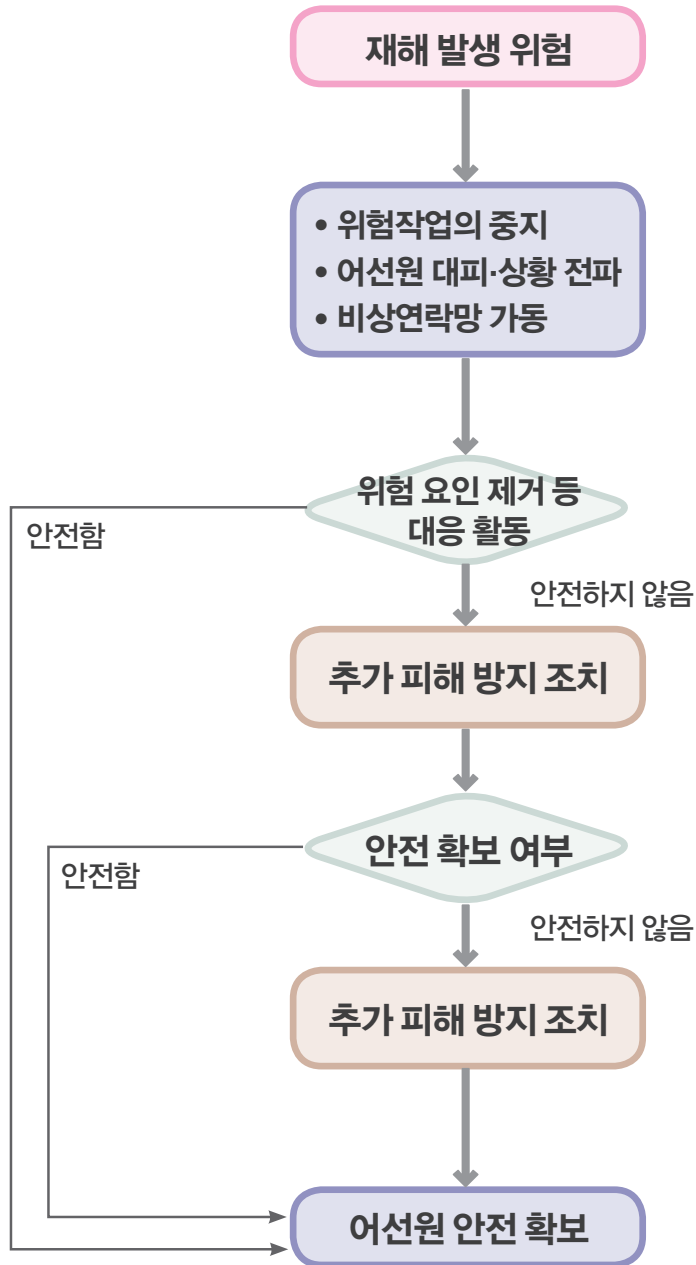
소속/직책	성명	서명	소속/직책	성명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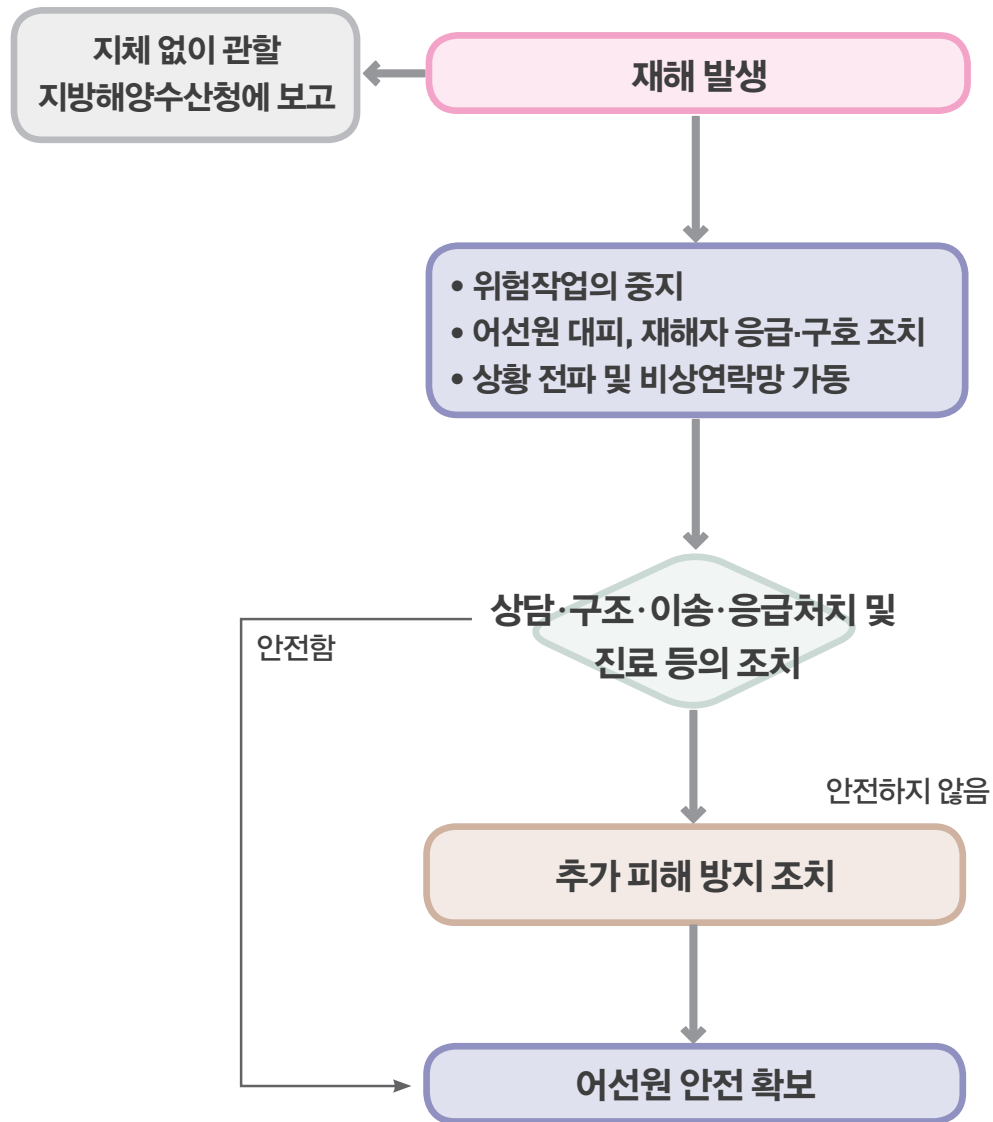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비상조치 계획

	담당	검토	승인
결재			
	/	/	/

중대재해 유형	☐ 화재 ☐ 추락 ☐ 협착 ☐ 감전 ☐ 누출 ☐ 기타()	
재해명		
발생 장소		
발생 내용		
예상 피해 (안전·보건 영향)		
조치 요령		
목표 시간	조치 내용	비고
()분		
()분		





비상훈련 실시

어선명	
어선소유자	
어선관리감독자	

훈련명	□ 화재 □ 추락 □ 협착 □ 감전 □ 누출 □ 기타()	훈련 일시	
훈련 장소			
참석 인원		사용 자재	
훈련 목적			
훈련 계획			
목표 시간			
차기 계획			



머로 밋 작업장네 보수관리 기록서

어선명	
어선소유자	
기간	

[illegible]

()년도 ()반기 중대재해 대응 절차 점검표

어선명	
어선소유자	
점검일	

양호	중대재해 및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 중지, 응급조치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짐		
미흡	중대재해 및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 중지, 응급조치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점검 내용		평가	
		미흡	양호
1. 중대재해 대응 절차에 따라 비상훈련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는가?		☐	☐
2. 중대재해 및 급박한 위험 발생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	☐
3. 중대재해 대응 절차에 중대재해 및 급박한 위험 발생 시 해당 작업 중지, 어선원 대피, 관계기관 보고 등의 내용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	☐
4. 중대재해 대응 절차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	☐
5. 중대재해 대응 절차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작업 중지(조업 중지)와 병원 치료 등 후속 조치를 담고 있는가?		☐	☐
6. 비상조치 계획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를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	☐
7.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비상조치 계획을 유해·위험 요인, 재해 유형 및 원인,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조조치, 추가 피해 방지조치, 상황 보고 및 전파, 담당자 역할 구분 등을 담아 작성하는가?		☐	☐
8. 다양한 재해 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 방안을 비상조치계획에 반영하는가?		☐	☐

어선관리감독자 평가표

어선명	
어선소유자(평가자)	
어선관리감독자(피평가자)	
평가일	

()년도 ()반기
어선관리감독자 평가표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고 재해 예방에 기여함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지 않음		
평가 내용	평가		
	미흡	양호	비고
1.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	
2. 어선원의 작업복·보호장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여부	☐	☐	
3.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여부	☐	☐	
4.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이행 여부	☐	☐	
5.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여부	☐	☐	
6.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 기준 이행 여부	☐	☐	
7. 선내 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절한 작업 인원의 배치 여부	☐	☐	
8.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이행 여부	☐	☐	
9. 안전·보건 예산의 적절한 집행 및 이행 여부	☐	☐	
10. 어선원의 비상 훈련(대피 훈련 포함) 및 교육 여부	☐	☐	
미흡 항목에 따른 조치 사항 기재			

어선명	
어선소유자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

이 계획서는 어선원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맞도록 내실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계획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 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수립된 개선계획서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 계획서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승선한 어선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이 개선계획서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의 재해 예방, 작업환경의 개선을 포함하여 내실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별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확 인	명령 일자	제출 일자	승 인	
			승인 일자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어선원 재해기록부

어선명	
어선소유자	

어선원재해조사표

어선 정보	어선명		어선소유자 (사업자등록번호)	
	어선(선박)번호		선종 (총톤수)	[]연근해어선 []원양어선 []그 밖의 선종(24 G/T)
	사업장 소재지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어선원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성별	[]남 []여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체류자격:]	직책		
	재해 구분	[]사망 []부상 []질병 []그 밖의 재해()				
	사고 부위(질병 부위)		휴업 예상 일수	[]일		
어선원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발생 일시 (대한민국 표준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 장소					
	발생 원인 및 과정					
	조치 사항					
어선원 재해 재발방지 계획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어선소유자:

어선원대표(어선원재해자):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선원대표의 이견서(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어선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조치 점검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조치 점검표

어선명	
어선소유자 또는 관리감독자	
점검 일자	

	순번	기술·능력·안전 평가 절차	확인
수급업체 선정 (계약 전)	1	안전수칙 준수 이행 여부	☐
	2	최근 1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여부	☐
	3	유사작업 경험 및 실적 유무	☐
안전조치 확인서 (작업 전)	1	기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보장	☐
	2	작업 전 위험 요소 점검	☐
	3	위험 작업 수행 전 발주자와 협의	☐
	4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준비	☐
위험 요소 3분점검 (작업 전)	1	기계 설비의 이상 유무	☐
	2	작업 공간의 정리정돈 상태	☐
	3	전기 배선의 안전 여부	☐
	4	위험 작업 사전 협의 및 승인	☐

* 계약 전 및 작업 전 안전·보건 조치 사항 등 확인

안전 평가 (1:미흡, 5:만족)						
항 목	1	2	3	4	5	비고
기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	☐	
작업 전 안전 점검 수행	☐	☐	☐	☐	☐	
위험 작업 사전 협의 여부	☐	☐	☐	☐	☐	



어선명

도급, 위탁, 용역 작업

위험성평가표

평가대상 작업 및 일자			평가자			
순번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고, 중, 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 고 중 저				
2		□□□ 고 중 저				
3		□□□ 고 중 저				
4		□□□ 고 중 저				
5		□□□ 고 중 저				
6		□□□ 고 중 저				
7		□□□ 고 중 저				
8		□□□ 고 중 저				
9		□□□ 고 중 저				
10		□□□ 고 중 저				

- * 이 매뉴얼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2025년 어선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 이 서식지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http://www.komsa.or.kr>)
공공누리(<http://www.kogl.or.kr>)

「중대재해처벌법」 「어선안전조업법」

이행 서식

안전관리실 - 2025 - 0004

- 발행일** • 2025년 12월 10일
- 발행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준석
- 발행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Tel 044.330.2380
- 총괄기획**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실
- 편집디자인** • 필드가이드 Tel 02.6375.2665

이 교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 편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자료 내용은 안전관리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업무상 이의제기 등 소명자료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선안전조업법」
이행 서식**



이 책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